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불산입 사유 추가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805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불산입 사유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불산입 사유 추가

개정안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때에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또는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는 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제4항 각 호의 기간
<u><신설></u>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

현행	개정안
④ ~ ⑦ (생략)	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그 수용되는 기간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현행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¹⁾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①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²⁾(제1호), ②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③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상황에 해당하면 공개명령이 선고된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때부터 공개명령이 집행되고 있음.

개정안은 수용 기간 이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로 장기 출국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어 실질적인 공개기간이 짧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의 선고로 해당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당초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 제외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³⁾의 신상정보

2)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⁴⁾ 및 대법원⁵⁾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로, 책임의 정도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형벌과 달리 기본권 제한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성범죄자들의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등).

-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성범죄자들의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결국,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면서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 할 것이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등)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은 법원이 당초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사실상 연장하여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공개기간에 바로 미산입하는 현행법 제49조제3항과 달리 법원이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이 해당 정보를 인지하여 공개대상자의 재범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

첫째, 현행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

벌법」과 동일한 내용⁶⁾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 개정하고,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등록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공개기간은 아직 도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제도의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법은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는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여성가족부가 이를 전달받아 공개·고지하는데,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의 신고의무만 규정⁷⁾할 뿐 현행법상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이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1주일 이상 6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없어 공개기간 산입 여부를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1주일 이상 해외에 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7)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류하는 경우 신고 등 관련 정보 제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공개기간에 넣지 않기로 선고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도 넣지 않기로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08호)」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49조제4항제1호의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된 경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개기간에 미산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